

한·터키 FTA 상세설명자료

2012. 7



KOREA-TURKEY FREE TRADE AGREEMENT

관계부처 합동



※ 동 설명자료는 한·터키 FTA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정문의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되었으
며 자료상의 용어는 협정상의 법률적 용어와 차이가 있
을 수 있음.



Contents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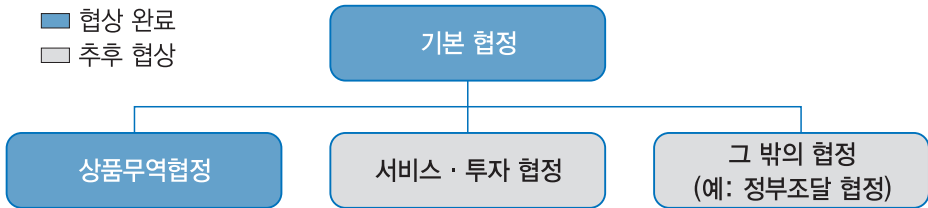
1	협정문 구성	1
2	서문 · 최초 규정	2
3	지식재산권	4
4	경쟁	7
5	투명성	10
6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11
7	분쟁해결	14
8	제도	18

9	상 품	19
10	원산지 규정	30
11	원산지 절차	37
12	관세 및 무역원활화	40
13	무역구제	43
1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46
15	예외 및 최종 규정	48

1 협정문 구성

I 협정문 구성

- 기본협정을 토대로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정 및 그 밖의 협정으로 구성



I 기본협정 구성

장(Chapter)	분 야
1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2	지식재산권
3	경쟁
4	투명성
5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6	분쟁해결
7	제도
8	예외 및 최종규정

I 상품무역협정 구성

장(Chapter)	분 야
1	일반정의
2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3	통관 및 무역원활화
4	무역구제
5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6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2 서문 · 최초 규정

I 서문

- 양국간 우호 관계, 투명성 증진, 상호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확대, WTO 등 다자 무역체제의 강화, 노동 및 환경법과 정책의 개발 · 집행 강화 등을 확인

I 최초 규정

1. 협정간의 관계 (기본협정 제1.4조)

- 한 터키 FTA가 △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 상품무역협정(Agreement on Trade in Goods), △ 서비스무역 및 투자협정(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and on investment) 및 △ 그 밖의 협정(any other agreements)으로 구성됨을 규정
 - 정부조달 분야를 향후 체결될 수 있는 분야별 협정의 하나로 예시
 - 상기 협정들이 한 터키 FTA를 구성하는 법적문서(legal instruments)의 일부임을 명시

2. 자유화 규정 (기본협정 제1.5조)

- 양국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투자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는 의무를 규정
 - GATT 제24조 및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상품무역의 점진적 자유화 의무 규정
 - GATS 제5조에 따른 양국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의 점진적 자유화 의무 규정
- 상품무역협정 발효 직후 서비스무역 및 투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하고, 상품 무역협정 발효 후 1년 내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규정

3. 분쟁해결 (기본협정 제1.6조)

- 한·터키 FTA를 구성하는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그 밖의 협정이 기본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의 적용 대상임을 규정
 - 서비스무역·투자 협상 목표 시한은 분쟁해결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지식재산권

I 개 요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 제공 및 권리관리정보를 보호
- 양측은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한국 : 2개, 터키 : 2개)를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상호 보호
- 지재권 보호와 관련 정보 교환 및 다양한 협력 활동을 규정

I 상세 내용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기본협정 제2.2조)

-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한 충분한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법적 구제를 제공(기본협정 제2.2조 제2항)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통제조치로, 이용통제와 접근통제로 대별됨.
 - 이용통제(use control): 저작물의 복제, 전송, 배포 등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통제
 - 접근통제(access control): 저작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
 - ※ 예: 암호를 넣어 이를 해제하여야 음악을 들을 수 있거나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조치

-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아래 행위 금지(기본협정 제2.2조 제3항)
 -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변경하는 행위
 - 고의로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된 저작물 등을 배포·방송 또는 전송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Rights Management Information)

- 저작물, 권리자, 이용조건 등을 식별하는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을 지칭

2. 상 표 (기본협정 제2.3조)

- 유명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된 경우, 동 유명상표의 등록, 유명상표 목록에의 등재, 유명상표로서의 사전인지(認知) 여부에 관계없이 구제 제공(기본협정 제2.3조 제4항)
- 상표등록 거절이유의 서면통지, 등록거절에 대한 이의제기와 사법적 불복청구 기회 부여 및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 제기 기회 부여(기본협정 제2.3조 제5항)
- 상표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에 대하여 서술적 용어의 공정한 사용과 같은 제한적 예외 인정(기본협정 제2.3조 제3항)

3. 지리적 표시 (기본협정 제2.4조)

지리적 표시(GI: Geographical Indication)

-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특정 지역, 지방,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 (WTO TRIPS 협정 제22조)



- 양국은 부속서에 기재된 양측의 지리적 표시(한국 : 2개, 터키 : 2개)를 TRIPS 협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자국법에 따라 상호 보호

※ 양측의 지리적 표시 목록

- 우리 : 고려홍삼, 고려백삼
- 터키 : 헤레케 카펫, 분안 카펫

《 우리 기체결 FTA 지리적 표시 보호 현황 》

구 분	한 · 칠레 FTA	한 · EU FTA	한 · 페루 FTA
우리	3	64	82
상대국	3	162	4

- 협정발효 후에도 양국 합의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 보호 대상 추가 가능

4. 인터넷상의 지재권 집행 (기본협정 제2.5조)

- 인터넷상의 반복적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시행(기본협정 제2.5조 제2항)

5. 점검 및 검토 (기본협정 제2.6조)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방당사국의 요청시 공동위원회에서 논의 가능
- 협정 발효 3년후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협정문의 이행 점검 및 더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협의 개시

4 경쟁

I 개 요

- 경쟁채터의 목적, 경쟁당국 및 경쟁법 유지 등 이행 의무, 통보·협의·비밀이 아닌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한 경쟁당국간 협력, 공기업에 대한 국내 경쟁법 적용 등을 규정

I 상세 내용

1. 목적 및 이행

- 자유경쟁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반경쟁적 행위로 무역 자유화 혜택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자의 경쟁법을 적용(기본협정 제3.2조)
 - ※ 경쟁 제한적 행위는 ① 경쟁제한적 목적 또는 효과를 지닌 사업자 간 합의 및 동조적 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결정, 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③ 경쟁을 중대하게 줄이는 사업자 간 기업결합을 의미(기본협정 제3.1조)
 - ※ FTA 체결로 인해 상품·서비스의 무역 자유화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또는 카르텔 행위 등이 빈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경쟁법 집행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역자유화 효과가 반감될 것임
- 경쟁제한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포괄적 경쟁법 및 경쟁법 집행을 책임지는 경쟁당국 유지 의무를 규정(기본협정 제3.3조)
 - 경쟁법 집행시, 경쟁당국은 투명성, 적시성, 비차별성 및 절차적 공정성 원칙 준수
 - ※ 동 협정 목적상, 경쟁법은 한국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과 터키의 '경쟁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54호' 및 하위 법령을 의미(기본협정 제3.1조)



2. 경쟁당국 간 협력

- 양 당사국은 경쟁법 집행의 효과성 제고 및 FTA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쟁당국 간 협력과 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 통보 협의 공개 가능한 정보의 교환 등을 통해 경쟁법 집행 및 집행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기본협정 제3.4조)
- 협의(기본협정 제3.5조)
 - 양 당사국의 상호 이해 증진 또는 경쟁챕터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상대국 요청시 협의 개시
 -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상대국의 우려 사항을 충분하고 호의적으로 고려
- 통보(기본협정 제3.6조)
 - 상대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당국의 집행 행위는 원칙적으로 초기 단계에 상대국 경쟁당국에 통보
- 비밀유지(기본협정 제3.7조)
 - 경쟁법 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진행 중인 조사에 영향을 주거나 당사국의 비밀유지 관련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한, 상대국 경쟁당국의 정보 요청 시 당사국 경쟁당국은 해당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
 - 경쟁당국은 기밀을 전제로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제공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어떠한 주체에게도 해당 정보의 공개 불가

3. 공기업 (기본협정 제3.8조)

- 각 당사국은 공기업의 설립 · 유지 가능
- 단, 당사국은, 해당 기업의 업무 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기업이 경쟁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 제한적 행위를 채택 · 유지하지 않도록 보장

4. 분쟁해결 (기본협정 제3.9조)

- 경쟁챕터 관련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FTA의 양자간 분쟁해결절차의 적용을 배제



5 투명성

I 개 요

- 투명성 분야는 국내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의무 사항 규정
- 한·EU FTA 내용과 유사하나,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규정

I 상세 내용

1. 정보교환 (기본협정 제4.1조)

-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법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협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응답
 - 비밀 정보 공개 요구는 미허용

2. 공표 및 행정절차 (기본협정 제4.2조)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법, 규정 및 행정 판정을 공표
- 국내법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법, 규정 및 행정 판정을 이행하는 조치에 대해 사전 공지
 -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기 조치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 제공

3. 재심 및 상소 (기본협정 제4.3조)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행정 행위를 재심하기 위한 공평하고 독립적인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절차를 수립·유지
 - 재판소/절차에서 각자의 입장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 및 기록에 근거한 결정이 제공되도록 보장
 - 자국법의 상소 또는 추가 재심 규정에 따라 재판소 결정 이행을 보장

6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I 개 요

- 국제노동기구(ILO) 1998년 선언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양당사자가 각각 비준한 다자간 환경협정(MEA)의 이행 의무를 규정
- 국내법 적용 및 집행시 무역과 투자의 촉진을 목적으로 환경이나 노동의 보호 수준을 저하하는 것을 금지함을 명시
 - 그러면서도 각국이 환경 및 노동 보호 수준을 설정하고 관련 법과 정책을 채택 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I 상세 내용

1. 국제노동기준 핵심원칙 준수 (기본협정 제5.4조)

- “2006년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각료선언”을 통해 합의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일자리의 중요성 재확인
- 「1998 ILO 선언」상의 핵심노동기준에 관한 원칙 존중, 증진 실현 약속
 - ※ 「1998년 ILO 선언」상 핵심노동기준 :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강제근로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철폐
- 각자 비준한 ILO 협약의 효과적 이행 재확인
 - ※ 우리나라는 제100호 남녀 동등보수 협약, 제111호 고용 직업상 차별금지 협약, 제138호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에 가입



2. 다자간 환경협정 (MEA) 이행 (기본협정 제5.5조)

- 이행 의무대상 다자간 환경협정(MEA) 이행 의지 확인
 - 각국이 가입한 다자간 환경협정(MEA)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
- 기후변화협약 이행 의지 확인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 이행 의지 재확인
 - － 발리 행동계획(Bali Action Plan)에 따라 향후 국제기후변화 체제 논의에 협력하기로 합의

3. 자국법 등의 적용 · 집행상 보호수준 저하금지 (기본협정 제5.7조)

-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자국 노동 · 환경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것을 명시
-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법상 노동 및 환경의 보호수준을 약화 또는 저하시켜서는 안됨을 명시

4. 투명성 (기본협정 제5.9조)

- 양국은 양국간 무역에 영향을 주는 환경 및 노동 조건 보호를 위한 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개발, 도입 및 이행하기로 합의

5. 노동 · 환경분야 협력 (기본협정 제5.10조)

- 동 챕터의 목표 달성을 위해 양국간의 다양한 협력활동을 규정
 - 국제 노동 또는 환경협정 비준 증진, 무역 관련 측면의 국제 기후변화체제 · 생물다양성 · 지속가능한 어업 · 국제노동기구에서 양질의 일자리 의제 관련 활동, 산업오염 방지 등

6. 이행 메커니즘 (기본협정 제5.11~5.12조)

- 양국은 동 챕터의 이행 감독을 위해 노동과 환경문제에 관한 접촉선을 각각 지정하여 정보 교환
 -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지정
- ※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협의는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국 관련 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작업반을 설치하여 진행(기본협정 제5.12조)



7 분쟁해결

I 개 요

- 분쟁해결절차는 WTO 협정 및 기체결 FTA의 분쟁해결절차와 유사
 - ① 당사국간 협의 → ② 패널 설치 → ③ 패널보고서 제출 → ④ 패널 보고서의 이행 → ⑤ 보상 또는 다른 의무의 정지”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규정
-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소국은 선택가능
 - 다만,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FTA와 WTO 분쟁해결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절차의 이용을 불허
-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
 - 패널 설치일 120일(최대 15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제출
 - ‘부패성 상품’ 등의 긴급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축 시한 적용
 - 패널 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패널보고서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불이행 시의 보상 및 혜택정지(보복) 절차를 규정
- 서면자료 제출, 심리 절차, 입증책임 등 패널의 세부 절차사항 및 중재패널 구성원의 의무 사항은 부속서(중재절차 규칙, 중재패널 구성원에 대한 행동 규범)에 별도 규정

■ 상세 내용

1. 분쟁해결절차의 적용 범위

- 경쟁,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SPS,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및 서비스·투자 협정 협상 목표 타결 시점 등을 제외한, 한-터키 FTA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적용
- 제안 단계에 있는 조치(proposed measure)는 패널 절차 대상에서 제외

2. 분쟁해결절차 선택 (기본협정 제6.3조)

- 한·터키 FTA에서는 포럼 선택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수의 분쟁해결 포럼의 관할 중복에 따른 절차적 불확실성을 최소화
 - 협정상 분쟁해결절차와 WTO 분쟁해결절차 모두 해당되는 경우 제소국은 선택가능
 - 다만, 포럼 쇼핑(forum shopping)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FTA와 WTO 분쟁해결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다른 절차의 이용을 불허
 - 일단 하나의 분쟁해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분쟁해결절차가 절차적, 관할적 이유로 불능 상태가 되지 않는 한 동일한 조치에 대하여 다른 분쟁해결 절차 이용 불가

3. 협의 (기본협정 제6.4조)

- 제소국의 협의 요청시, 요청 접수일 이후 30일 이내에 협의 개최



4. 중재패널 절차 (기본협정 제6.5조~제6.10조)

- 협의 요청 접수일 이후 30일 이내에 분쟁 미해결시, 제소국은 중재패널 설치 요청 가능
 - 중재패널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며, 중재패널 설치일은 중재인이 임명된 날
 - 중재패널은 비공개이며, 중재패널에 제출된 자료는 비밀로 취급
- 패널은 패널 설치일 90일(최대 120일) 이내에 잠정보고서 제출
- 패널은 패널 설치일 120일(최대 15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제출

패널 구성

- 패널은 3인의 패널리스트로 구성
- 3인 중 2인은 각 당사국이 1인씩 지명하고, 패널 의장인 나머지 1인은 양국이 합의
- 양국이 미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공동위원회에서 작성된 예비명부(각 당사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10인)에서 공동위원회의 의장이 선정

긴급 사안(urgent matters)에 대한 분쟁해결기간 단축

- 부패성 상품을 포함한 긴급 사안의 경우,
 - 잠정보널보고서 제출 시한 : 패널 설치 이후 90일(최대 120일) → 45일(최대 60일)
 - 최종패널보고서 제출시한 : 패널 설치 이후 120일(최대 150일) → 60일(최대 75일)

5. 패널보고서의 이행 (기본협정 제6.11조)

- 패널보고서는 당사국에 구속력이 있으며, 패널보고서가 조치의 위반을 판시한 경우에는, 피소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반성(non-conformity) 제거 의무

- 양국은 최종패널보고서 제출 이후 45일 이내에 합리적인 기간에 합의하고, 미합의시 제소국이 중재패널에 회부, 중재패널이 합리적인 기간 결정
- 피소국은 중재패널 권고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보
- 합리적인 기간 내 이행 여부에 대한 분쟁 발생시 중재패널 회부 가능

6. 보상 또는 의무의 정지 (기본협정 제6.12조)

- 피소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 조치를 통보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또는 중재패널이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보상 협상 개시
- 보상 협상 요청 접수 20일 이내에 보상 미합의시, 제소국은 통보 후, 한·터키 FTA 협정 상 의무 적용 정지 가능
- 의무 정지는 위반성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



8 제 도

1. 공동위원회

- 운용 : 양국 통상장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설치
 - 원칙적으로 매년 서울 또는 앙카라에서 교대로 개최
- 주요 권한 : ① 협정의 이행과 적용 감독, ② 협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작업반의 작업 감독, ③ 협정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안 강구, ④ 협정의 개정 권고
- 의사결정 :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정에 규정된 모든 사안에 대해 양국의 적용 가능한 국내절차 준수를 전제로 결정(decision)을 하거나, 권고(recommendation) 가능
 - 공동위원회의 결정(decision)은 양국에 구속적인 효력을 가지며, 각각의 국내 절차에 따라 이행할 의무 부여

2. 위원회 및 작업반

- 공동위원회 산하에 위원회, 작업반 등을 설치
- 위원회 및 작업반은 일정 · 의제 · 활동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존재

9 상품

I 개요

- 관세 인하 또는 단계적 철폐, standstill 등 상품의 시장접근 관련 각종 의무사항은 협정문에 규정하고, 양허유형 및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일정은 부속서에 규정
-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의 투명성 보장의무 규정

I 상품 협정문

1.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상품무역협정 제2.4조)

- 부속서에 규정된 일정에 따라 각 품목의 관세를 인하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규정
 - 일방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와 그 범위의 확대를 위해 협의할 의무를 부여

2. 수입에 대한 수수료 및 그 밖의 부과금 (상품무역협정 제2.8조)

- 수입 수수료의 경우, GATT 제8조에 따라, 수입과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에 소요된 대략적인 비용과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부과 가능
 - 추가적으로 이를 구체화하여 종가세(ad valorem) 형태의 수입 수수료는 부과될 수 없음을 명시



3.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 (상품무역협정 제2.11조)

■ 무역 관련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

- 아울러, 양자간 무역에 불필요한 제한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조치도 준비 · 채택 ·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규정

4. 상품위원회 설치 (상품무역협정 제2.13조)

■ 어느 한쪽 당사자 또는 공동위원회 요청시, 상품위원회 개최

- 상품위원회의 기능은 △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와 그 범위의 확대를 포함한 양자간 무역 촉진, △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 · 비관세조치 검토,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관련 사안의 논의 및 정보 교환을 위한 포럼 제공 등을 포함

■ 상품 양허

- 상품 전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향후 양국간 교역 증진 기대

※ 한· 터키 교역(2011년): 총 59억불 (對터키 수출 51억불, 수입 8억불)

- 양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10년 이내 약 100% 관세철폐 달성

※ 품목수 기준으로는 우리는 92.2%, 터키는 89.8%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10년내 철폐

《 한 · 터키 FTA 전체상품 양허수준 비교 》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2007-2009 평균 수입액 기준)

양허단계		우리 양허				터키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즉시		9,559	80.5	296.4	82.5	7,868	65.0	2,064	53.8
3년		200	1.7	14.4	4.0	350	2.9	338	8.8
5년		434	3.7	25.4	7.1	975	8.1	588	15.3
7년 비선행						4	0.0	169	4.4
7년		150	1.3	2.7	0.8	869	7.2	676	17.6
10년		609	5.1	18.8	5.2	801	6.6	1.7	0.0
(10년내소계)		10,952	92.2	357.8	99.6	10,867	89.8	3,837	100.0
관세감축(RD)		134	1.1	0.2	0.1	175	1.4	0.0	0.0
양허제외		795	6.7	1.2	0.3	1,060	8.8	0.2	0.0
	E(standstill)	599	5.0	1.1	0.3	748	6.2	0.1	0.0
	standstill배제	180	1.5	0.0	0.0	312	2.6	0.0	0.0
	R	16	0.1	0.0	0.0				
총합계		11,881	100.0	359	100.0	12,102	100.0	3,837	100.0



■ 공산품의 경우, 우리의 對터키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최고 22%관세율 적용중), 철강(23.4%), 칼라TV(14%)를 포함하여 터키로 수출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7년 이내 관세 철폐

● 반면, 우리의 對터키 수입품 중 40%가 석유, 아연광, 동광 등 광물 제품인 바 한·터키 FTA 체결로 인한 추가 개방 부담은 미미

※ 2011년 우리의 對세계 수입액(5244억불) 중 對터키수입액(8억불)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

■ 농수산물의 경우, 한·터키간 농수산물의 교역이 적고('07~'09 평균 對터키 수입액 43백만불) 주요 민감품목이 양허제외로 타결되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 우리는 쌀,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포도, 오렌지, 명태, 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 795개 품목(품목수 기준 40.7%)에 대해 양허제외

《 한 · 터키 상품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품목수 HS 10단위 기준)

한국 양허		양허유형	터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파스타, 토마토페이스트, 건포도, 토마토케첩, 조제식료품, 타임및월계수잎, 밀(사료용), 공기조절기, 금속절삭가공기계, 냉장고, 모자, 아연광, 양탄자, 의료용기기, 광물성연료(나프타,원유)	9,559	즉시 철폐	7,868	인스턴트커피, 담배(완성품), 라면, 소주, 김치, 맥주, 한천, ABS 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일부평판압연제품, 기타알루미늄제품,신변장식용품,포트랜드시멘트,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조립식목재건축물, 철도차량부품
내시경, 농약, 밸브, 베어링, 변압기 부품, 펌프, 계측기, 대리석	200	3년 철폐	350	차량용고무타이어, 공기조절기, 원통기 와퍼프, 볼트와너트, 가열난방기
초콜렛(속을채운것) 올리브유(버진), 드롭프스, 레몬 스파게티, 사탕수수, 참다랑어, 조립식목재건축물, 제재목, 전동축, 알루미늄의 판·쉬트	434	5년 철폐	975	밀의글루텐, 인삼류, 선인장, 청어, 기타자동차부품, 면사, 편직물, 일부합성 필라멘트사, 합성필라멘트사직물, 냉장고, 전동기, 가솔린/디젤 중·대형
—	0	7년 비선행	4	가솔린/디젤 1600cc이하 소형승용차 (4개세번)
잼, 버터조제품, 헤즐너트, 무화과(선/건조), 양모사, 섬유모사, 직물,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PB)	150	7년 철폐	869	틀림, 글라디올러스, 밀크알부민, 양모및섬유모호방직물, 거어박스, 평판 압연제품, 칼라 TV, 세탁기
임담배(오리엔트종), 밀가루, 레몬 주스, 와인, 파래, 김, 피스타치오	609	10년 철폐	801	임담배(황색종), 양배추, 오이, 감자 곶등어, 연어, 넙치, 참다랑어
보조사료, 해삼, 멸치	134	RD (관세감축)	175	요구르트, 추잉껌, 마가린, 설탕과자, 송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포도, 오렌지, 감귤, 갑오징어(냉동), 꿀, 전복, 밤, 잣, 대추, 호두	599	E (양허제외)	748	혼합주스, 파인애플, 버찌, 살구
기타궤련, 로얄제리, 아이스크림	180	NS (standstill 배제)	312	닭고기, 유장, 치즈, 버
쌀	16	R	0	—

※RD : 양측 양허스케줄 비교란에 적시된 감축 관세를 적용

E : 양허표상의 기준 세율 유지(standstill 의무 적용)

NS : standstill(동결)의무로부터 제외(적용세율을 WTO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R : FTA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품목으로 협정상 모든 의무에서 제외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1. 공산품

- 양측 모두 공산품 전품목에 대해 7년내 관세철폐 달성 및 높은 수준의 5년내 조기 관세철폐 달성

※ 수입액 기준, 우리는 99.8%, 터키는 77.9%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철폐

※ 품목수 기준, 우리는 98.7%, 터키는 91.2%에 해당하는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철폐

- 우리의 對터키 주요 공산품 수입은 원유, 나프타, 아연광 등 자연광물로 우리 주요 수출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품목이며, 여타 터키측 공산품도 경쟁력이 높지 않아 한·터키 FTA로 인한 실질적 추가 개방 효과는 제한적

《 한·터키 FTA 공산품 양허수준 비교 》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2007-2009 평균 수입액 기준)

양허단계	우리 양허				터키 양허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즉시	9,365	94.3	292.9	92.9	7,389	77.8	2,059	53.8
3	200	2.0	14.4	4.6	350	3.7	338	8.8
5	233	2.4	7.6	2.4	913	9.6	587	15.3
(5년내)	9,798	98.7	314.9	99.8	8,652	91.2	2,985	77.9
7A					4	0.0	169	4.4
7	129	1.3	0.5	0.2	835	8.8	676	17.6
합계	9,927	100.0	315.4	100.0	9,491	100.0	3,830	100.0

※ 7A: 7년 비선형철폐 양허단계로 이행초기단계에서 관세폭을 크게 삭감하는 방식

- 터키는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터키 관세율 0~22% '07-'09년 평균 對 터키 수출액 3억 9천만불)관련, 일부 중·대형 승용차(10%)는 협정 발효후 5년내 관세철폐, 1600cc이하 소형 자동차(터키 전체 승용차 시장의 90% 이상 점유) 4개 세번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후 7년 비선형 관세철폐로 대터키 수출 확대 전망

※ 터키는 우리의 16위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09년이후 자동차 수출 증가추세 대터키 자동차 수출대수 (대): 3만2천('09년→5만('10년)→5만3천('11년)

《7년 비선형 관세 철폐 스케줄》

	이행1년차	이행2년차	이행3년차	이행4년차	이행5년차	이행6년차	이행7년차	이행8년차
관세율(10%)	8.5	7	5.83	4.67	3.5	2.33	1.17	0
관세인하(%p)	-1.5	-1.5	-1.17	-1.16	-1.17	-1.17	-1.16	-1.17

※ 7년 비선형 해당 세번: HST 8703221010, 8703231911, 8703311010, 8703321911

※ 이행 1년차란 발효되는 연도를 의미

- 그외 주요 수출품에 대해 7년이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우리 업계의 對터키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석유화학(터키 관세율 0~6.5%, '07-'09년 평균 對터키 수출액 3억 7천만불) 품목 대부분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 철폐
- 섬유(0~12%, 2억 7천만불) 관련,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화섬장섬유사, 화섬단 섬유, 화섬직물 및 편직물 등이 5년 내로 관세 철폐

※ 특히, 섬유의 경우 Special Safeguard(일종의 산업보호관세로서 섬유 제품에 20~30% 추가 세금 부과)의 면제 혜택 확보

- 칼라TV(14%, 9천6백만불)는 7년 관세철폐, 냉장고(1.5~2.5%, 2천 1백만불)는 5년 관세철폐



《 한 · 터키 주요 수출입 공산품양허 비교 》

순위	우리 양허 (對터키 주요 수입품)				터키 양허 (對터키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9 평균	우리 양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9 평균	터키 양허
1	기타액화석유가스	5%	39,583	0	LCD	무세	257,711	0
2	원유 (비중0.855~0.869)	3%	31,990	0	무선통신기기	무세	227,151	0
3	제87류차량용부품	8%	28,444	0	기타석유제품	3.5%	114,356	0
4	원유 (비중0.841~0.847)	3%	28,148	0	실린더용량2500cc초 과화물자동차	10%	91,467	7
5	나프타	무세	8,392	0	기타부분품과부속품	3%	80,909	7
6	원유 (비중0.796~0.841)	3%	6,739	0	실린더용량1600~2000cc 디젤 차량	10%	79,195	7
7	아연광과그정광	무세	6,520	0	무한케도시식육고기	무세	78,647	0
8	화물선	무세	6,404	0	기타텔레비전 수신용의기기	14%	76,536	7
9	데님	10%	5,971	0	프로펠렌공중합체	6.5%	72,304	0
10	정제하지아니한동	무세	5,722	0	기타평판압연제품	무세	63,294	0
	(10대 수입소계)		167,913		(10대 수출소계)		1,141,572	
	공산품 수입합계		315,413		공산품 수출합계		3,830,197	

《 한 · 터키 공산품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품목수 HS 10단위 기준)

한국 양허		양허유형	터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공기조절기, 금속절삭가공기계, 냉장고, 모자, 아연광, 양탄자, 의료용기기, 광물성 연료(나프타, 원유, 기타석유제품)	9,365	즉시 철폐	7,389	ABS합성수지, 기타플라스틱제품, 일부평판 압연제품, 기타알루미늄제품, 신변장식용품, 포트랜드시멘트, 합판, 섬유판, 파티클 보드, 조립식목재건축물, 철도차량부품
내시경, 농약, 밸브, 베어링, 변압기부품, 펌프, 계측기, 대리석	200	3년 철폐	350	차량용고무타이어, 공기조절기, 원동기와 펌프, 볼트와너트, 기타산업기계, 가열난방기
조립식목재건축물, 제재목, 전동축, 알루미늄의 판·шит, 화강암, 가솔린경차, 가솔린/디젤 소형	233	5년 철폐	913	기타자동차부품, 면사, 편직물, 일부합성필라멘트사, 합성필라멘트사직물, 냉장고, 전동기, 가솔린/디젤 중·대형
-		7년 비선형	4	가솔린/디젤 1600cc이하 소형승용차(4개 세션)
양모사, 섬유모사, 직물,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PB)	129	7년 철폐	835	양모및섬수모혼방직물, 거어박스, 평판 압연제품, 칼라 TV, 세탁기

2. 농수산물

- 양측은 농수산물 분야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수 및 수입액 기준 동일한 수준의 양허 달성
 - 10년 이내 관세철폐 품목수 비중: 우리 52.5%, 터키 52.7%
수입액 비중: 우리 96.7%, 터키 96.8%
- 우리는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쇠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양념채소류 등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에 대해 양허제외(품목수 기준 40.7%)하고, 양허 품목의 경우에도 관세부분감축, 장기관세철폐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감품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확보
 - 【양허대상제외 및 현행관세유지】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포도, 갑오징어, 고추, 꿀, 넉치, 마늘등에 대해 추가개방 없이 현행관세 유지
 - 【관세부분감축】 민감정도에 따라 관세인하 수준을 10~30%로 조정, 인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 유지
 - 사료용조제품(10%감축, 50.6%→45.5%), 소라(20%감축, 20%→16%), 기타 포도주(30%감축, 15%→10.5%)
- 우리는 對터키 최대 수출품인 인스턴트 커피(총 對터키 수출액의 55%차지)를 즉시 철폐하고, 수출 잠재력 품목인 김치, 면류(라면, 당면, 국수), 소주에 대해 즉시 철폐 확보



《 한 · 터키 FTA 농수산물 양허수준 비교 》

(품목수는 HS 10단위 기준, 수입액은 2007-2009 평균 수입액 기준)

양허단계	우리 양허				터키 양허				양허단계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품목	비중	수입액(백만불)	비중	
즉시	194	9.9	3.5	8.1	479	18.4	4.8	68.5	즉시
5	201	10.3	17.9	40.8	62	2.4	0.3	4.2	5
(5년내)	395	20.2	21.4	48.9	541	20.7	5.1	72.7	(5년내)
7	21	1.1	2.1	4.9	34	1.3	0	0.0	7
10	609	31.2	18.8	42.9	801	30.7	1.7	24.1	10
(10년내)	1,025	52.5	42.4	96.7	1,376	52.7	6.8	96.8	(10년내)
RD	134	6.9	0.2	0.6	175	6.7	0.0	0.5	RD
양허제외	795	40.7	1.2	2.7	1,060	40.6	0.2	2.7	양허제외
E	599	30.7	1.1	2.5	748	28.6	0.1	1.6	E
NS	180	9.2	0.0	0.2	312	11.9	0.0	1.1	NS
R	16	0.8	0.0	0.0					R
합계	1,954	100.0	43.9	100.0	2,611	100.0	7.1	100.0	합계

《 한 · 터키 주요 수출입 농수산물 양허 비교 》

순위	우리 양허 (對터키 주요 수입품)				터키 양허 (對터키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9 평균	우리 양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07-09 평균	터키 양허
1	임담배(오리엔트종)	20%	6,379	10	기타커피	9%	3,858	0
2	기타조제어류	20%	6,325	5	기타담배	25%	702	10
3	임담배(오리엔트종)	20%	3,205	10	임담배(황색종)	25%	592	10
4	해바라기씨유	10%	3,120	5	기타제조담배	16.6%	381	0
5	밀가루	4.2%	2,648	10	고등어	53%	356	10
6	참다랑어(피레트)	10%	2,601	5	청어	53%	208	5
7	헤즐너트	8%	1,837	7	면류(기타 파스타)	6.4+40.27/EUR/100kg/net	159	0
8	채소주스	30%	1,812	10	기타제조담배	16.6%	147	0
9	초콜릿및초콜릿과자	8%	1,409	5	한천	무세	101	0
10	참다랑어(냉동)	10%	1,076	5	기타주스	58.5%	96	E
	(10대 수입 소개)		30,412		(10대 수출 소개)		6,600	
	농수산물 수입 합계		43,886		농수산물 수출 합계		7,062	

《 한·터키 농수산물 양허 유형별 주요 품목 》

(품목수 HS 10단위 기준)

한국 양허		양허유형	터키 양허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파스타, 토마토페이스트, 건포도, 토마토케첩, 조제식료품, 타임및월계수잎, 올리브유및그분획물, 밀(사료용)	194	즉시 철폐	479	인스턴트커피, 담배(완성품), 라면, 기타조제식료품, 소주, 김치, 간장, 된장, 맥주, 유아용조제식료품, 한천, 황다량어
초코렛(속을채운것), 올리브유(버진), 드롭프스, 레몬, 스파게티, 사탕수수, 인스턴트커피, 참다량어	201	5년 철폐	62	밀의글루텐, 인삼류, 선인장, 장미, 겨자씨, 개 및 고양이사료, 청어
잼, 버터조제품, 무화과(신선/건조), 맥주, 식염, 헤즐너트	21	7년 철폐	34	튤립, 글라디올러스, 밀크알부민, 고래류
임담배(오리엔트종), 밀가루, 코코아페이스트, 레몬주스, 옥수수유, 겨자유, 간장, 위스키, 와인, 해바라기씨조유, 포도주스, 멸치통조림, 파래, 김, 피스타치오	609	10년	801	임담배(황색종), 양배추, 오이, 감자, 콩, 고등어, 연어, 넙치, 참다량어
보조사료, 코코아분말, 해삼, 멸치, 송어, 게, 굴, 홍합, 아귀, 가오리	134	RD	175	요구르트, 추잉껌, 마가린, 설탕과자, 송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추, 마늘, 양파, 포도, 오렌지, 감귤, 갑오징어(냉동), 꿀, 전복, 밥, 잣, 대추, 호두	599	E	748	혼합주스, 파인애플, 버찌, 살구
기타결련, 로얄제리, 아이스크림	180	NS	312	닭고기, 유장, 치즈, 버
쌀	16	R	0	-



10 원산지 규정

I 개 요

- 터키-EU간 관세동맹* 관계를 고려하여 한-EU FTA상의 특혜 원산지 규정을 기본으로 합의하되,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 쿼터 물량을 설정

* 터키-EU 관세동맹에 따라 터키는 EU의 FTA 상대국과 FTA 협상시 EU가 그 국가와 체결한 FTA의 원산지 규정과 맞춰야 할 의무를 부담

-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우리측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의 민감성과 원자재 해외조달 비율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규정
 - 전기·전자제품 등 대부분의 주요 공산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의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
 - 설탕과자, 초콜릿 함유 식료품, 기타 비스킷 등 일부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한·EU FTA보다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면사, 재생필라멘트 직물,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는 각각 연간 200톤의 원산지 예외쿼터를 설정하여 교역을 촉진
-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 마련
 - 한-EU FTA에서와 같이, 한-터키 FTA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가공지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

■ 상세 내용

1. 원산지 일반 규정

가. 특혜 원산지 기준

- FTA 특혜원산지 판정기준 중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등 원산지 판정의 일반원칙 및 각 품목에 대한 개별적 원산지 판정기준을 원산지 의정서에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각 품목별 생산과정, 교역패턴과 글로벌 아웃소싱 추세를 반영하여 정교한 판정기준을 마련

- 양측은 완전생산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 ① 양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된 식물
- ② 양국의 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
- ③ 양국영역에서 나고 자란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④ 양국의 영역에서 채취한 광물 및 천연 자원
- ⑤ 양국의 영역에서 어로행위, 양식 등을 통하여 획득한 상품
- ⑥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그 선박에 의한 어로행위로 획득된 상품 및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가공선택에서 생산된 상품
- ⑦ 당사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공정으로부터의 폐기물 및 부스러기
- ⑧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토양으로부터 채취된 상품. 다만, 당사국은 그 해저나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함.

- 양국은 완전생산기준이외의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또는 주요 공정기준 등 규정

- 부가가치 기준 (VAR, Value Added Rule)

- 한·EU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기준은 공장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고, 허용된 역외산 부품사용 비율의 상한선을 규정

※ 예 : Manufacture in which the value of all the materials used does not exceed 40%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 공장도 가격 :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임.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 상품의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

《 세번변경 기준 》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HS번호)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예:HS 2단위, 4단위, 6단위)기준으로 차이가 있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예 : 원유(HS2709)를 수입하여 석유(HS2710)를 생산할 경우 4단위 세번 변경

《 세번변경 기준 》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최종 생산물의 일정 수준 이하(예 : 공장도 가격 기준의 45%)의 역외산 재료를 사용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세번변경 기준 》

- 화학반응, 정제공정, 블렌딩공정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경우에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나. 미소(De Minimis) 기준

- 양국은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서 역외산 재료(non-originating material)가 양국이 합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품 가격(공장도가)의 10% 미만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함의

※ 미소기준은 원산지기준 판정의 효율성을 위해 대부분 FTA에 반영

- 단, 섬유류(50-63류)에 대해서는 일반 미소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주해(Introductory Notes)에 규정되어 있는 별도의 섬유미소기준 적용

	한·터키 FTA	한·미 FTA
섬유류 (50-63류) 미소기준	품목마다 다른 미소기준 적용 - 8-35%, 중량 및 공장도가격기준 등 다양	중량기준 7%

다. 대체가능 재료 및 물품

-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 및 물품의 원산지 판정 특례를 인정
 - 대체 사용가능한 재료 및 물품을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는 판정의 간소화 및 무역편의 증진을 위해 재고관리법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식 도입
 -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 데에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재고 관리를 위한 구분 회계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회계기법은 당해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GAAP)에 따라 기록, 유지

라. 기타 주요내용

- 누적기준
 - 역내산(터키산 및 한국산) 원부자재의 교역활성화를 위하여 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한 경우 이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누적기준을 도입
- 세트 물품



-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가격의 15% 이하인 경우에는 세트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중립재료

- 제품의 생산에 사용은 되었으나 최종재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은 연료, 도구, 장비 등의 재료는 원산지 판정을 하는데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

■ 직접운송 원칙

- 한·터키 양국이 아닌 제3국(경유국)에서 ① 단순하역 작업이나 제품의 보존이나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가공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나 ② 세관 당국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함의
- 제3국에서 전시된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 전시 후에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그 상품이 한-터키 F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특혜관세 대우를 부여하도록 규정

2. 품목별 원산지 규정

가. 주요 특징

- 터키-EU간 관세동맹 관계를 고려하여 한-EU FTA상의 특혜 원산지 규정을 기본으로 합의하되, 양측의 교역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일부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 쿼터 물량을 설정
- 설탕과자(HS 1704), 초콜릿 함유 식료품(HS 1806) 및 기타 비스킷(ex HS 1905.90)에 대해서는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채택하여 한·EU FTA보다 원산지 기준을 완화
- 또한, 우리의 대 터키 수출이 많거나 수출이 유망한 면사(HS 5205), 재생필라멘트 직물(HS 5408) 및 재생 또는 반합성 스테이플 섬유사(HS 5510)에 대해서는

각각 연간 200톤의 원산지 예외쿼터를 설정하되, 한국과 터키 양국이 각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주요 공산품 원산지 규정

품 목	원산지 기준
자동차	- 완성차: 역외산 부품비율 45% 이하 - 자동차 부품: 역외산 부품비율 50%이하 또는 세번변경기준(CTH) - 모터사이클, 트레일러 등 기타자동차의 경우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외산 허용치 50%에 합의 · 철도차량은 세번변경기준, 자전거는 역외산 허용치 45%를 적용
기계, 전기·전자	- 세번변경기준(CTH)과 역외산 부품사용비율 45-50%중 선택
의 류	- 직물기준 ※ 직물기준 (Fabric Forward) : 한 · 미 FTA의 원사기준(Yarn-Forward)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2단계의 공정을 거치면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 변형기준이라고도 함
화학제품	-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세번변경기준(CTH) 적용
비철금속	- 구리와 알루미늄의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세번변경기준(CTH) 적용
신 발	- 역외산 갑피(upper)와 안창 사용(inner sole)이 인정되나, 갑피가 안창에 부착된 채로 수입된 것은 허용하지 않음. - 다만, 선택적으로 부가가치 기준 50%이하 기준 적용가능

다. 주요 농·수산물 원산지 규정

대상품목	원산지 기준
쌀·녹차·인삼·참기름 및 관련 제품	역내산 (완전생산기준)사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역내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완전생산기준)
수 산 물	역내에서 어획된 것(완전생산기준)



3. 개성 공단

-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 (한·EU FTA와 동일한 문안 채택)
 - 원산지 의정서 및 동 부속서에서 규정
 - 한·터키 양국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구성, 역외가공지역(OPZ)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
 - OPZ내에서 생산된 제품은 일정 요건하에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 관세를 부여 받으며, 개성공단 외 다른 지역도 OPZ로 선정 가능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 개요》

- 구성 및 운영 :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 협정 발효후 1년 후 개최 (매년 1회 개최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 개최 가능)
- 기능
 - － 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지정
 - － 동 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OPZ 지정기준의 충족여부의 판정
 - － OPZ의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OPZ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 가치의 최대 비율을 설정

11 원산지 절차

I 개 요

- 원산지 절차는 원산지 증명 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및 원산지 검증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
 - 원산지 증명은 전면 자율증명 방식을 도입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급 주체가 인증수출자에 한정되지 않도록 함
 - 원산지 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관세당국이 검증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

I 상세 내용

1. 원산지 증명 방식 : 자율증명

- 원산지 증명은 원칙적으로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방식을 채택
 -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자율증명이 가능한 한-EU FTA와 달리 증명서 발급 주체를 인증수출자로 한정하지 않음

《 한·EU, 한·터키 FTA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

구분	한·EU FTA	한·터키 FTA
제도	자율증명	자율증명
증명서 발급 주체	수출국 관세당국이 지정하는 인증수출자	수출자

- 원산지 증명서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은 인보이스 신고(Invoice Declaration) 방식을 채택



2. 특혜관세 신청절차 기타 사항

- 원산지 증명서(Origin Declaration)는 원칙적으로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
- 원산지 증명서의 면제
 - 소액의 개인용 물품과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생략
 - 금액한도는 터키의 경우 개인용품은 500유로 이하, 개인수하물은 1,200유로 이하이며, 우리의 경우 구분 없이 미화 1,000불 이하
-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 수입통관 1년(우리 수입) 또는 2년(터키 수입) 이내에 가능
- 원산지 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원산지 증명서를 무효화할 수 없도록 규정
 - ※ 특혜관세 신청절차 관련 조항은 한·미 및 한·EU FTA의 내용과 대부분 유사

3. 원산지 검증 (verification)

- 특혜관세 진위 여부 검증은 원칙적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을 도입
 - ※ 직접검증 :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 (verification visit) 등을 통해 원산지의 적정성을 검증
 - ※ 간접검증 : 수입국 세관당국이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수출국 세관당국이 원산지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
- 한·EU FTA 원산지 검증제도와 상당부분 유사

- 간접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시 수입국 관세 공무원 입회가능
-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및 여타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
 - 우리의 관세부와 제척기간(5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산지 증빙서류를 보관토록 하여 협정이행의 실효성을 확보
 - ※ 증빙서류 : 수출물품의 구매·가격·평가·지불에 관한 서류, 원재료의 구매·가격·평가·지불에 관한 서류, 수출물품의 생산과정 증빙서류 등
 -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비용부담 및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전자방식 등 다양한 매체에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국내법에 기반영된 사항(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수입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요청을 하지 않고 특혜관세 적용을 바로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
 - 원산지 규정상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당초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원산지 증명서가 비당사국 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경우
 - 수입국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4. 관세환급

- 관세환급제도를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후 필요시 관세위원회에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
 - 한·EU FTA 상 규정된 발효 후 관련 통계교환 의무 및 관세환급 제한시 환급 가능한 상한선을 삭제함으로써 한·EU FTA보다 완화된 조항 도입



12 관세 및 무역원활화

I 개 요

- 관세 및 무역원활화 분야는 상품 수출입 과정에 수반되는 통관 절차와 관세협력 관련 내용을 규정
 -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 신속화에 대한 사항과 수출입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및 양측 관세당국간의 협력증진 등을 규정

I 상세 내용

1.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 신속한 물품반출을 통한 양국간 교역 촉진을 위하여 당사국의 간소화된 통관절차 유지 의무 규정
 - 신속한 화물반출 및 반출시간 단축 노력 의무 규정
 -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전 사전신고, 세액 결정전 화물반출 승인, 부두직통관 제도 도입
 - 위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고위험 화물은 중점 검사하되, 저위험 화물은 통관 및 반출 절차를 간소화
 - 위험성이 낮은 대부분의 화물이 신속히 통관될 수 있어 우리 기업 물류비용 절감 및 생산성 증대 기대
- ※ 현재 우리 관세당국은 화물위험관리시스템(Cargo Selectivity System)을 개발하여 화물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 검사하는 제도를 운영중

2. 관세행정의 투명성 증대

- 관세행정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관세 법령 및 관세행정 절차의 공표를 의무화
 - 이해관계인의 관세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안내창구(inquiry point) 운영 의무
 - 관세 법령 및 관세행정 절차의 중요한 개정사항은 상대국 관세당국에 적시에 통보토록 노력
- ※ 현재 우리 관세당국은 관세법령과 행정규칙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고 있고, 관세청에 콜센터를, 각 세관관서에 민원전담창구를 설치·운영 중

3.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

- 품목분류 및 원산지 등에 관한 무역업자의 의문사항에 대해 수입국 관세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 제도 규정
 - FTA 특혜관세 신청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써 특히 영세 중소기업체의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 기대
 - 품목분류와 관련한 사전판정 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

4. 불복청구 절차

- 수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관세결정에 관한 불복청구권 보장
 - 수출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수입자를 거치지 않고 수입국 행정심판 당국에 소명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 원산지 소명자료는 제품원가 등 기업기밀을 포함하고 있어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제공하기 곤란하므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5. 자료 비밀유지

- 자료를 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비밀유지를 위해 수입국 행정심판 당국의 자료비밀 보장의무 규정
 - 비밀자료는 제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
 - 사법절차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공개하는 경우 제출자에게 사전 통보 의무화

6. 관세협력 확대

- 세관분석 기법 조화, 세관공무원 교환, 공동훈련 프로그램, 지식재산권 단속 및 화물 보안 등 관련한 관세협력 확대 추진
- 기존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을 제공하기로 함
-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 관련 문제에 대한 지정된 연락처(contact point) 목록을 상호 교환하기로 함

7. 관세위원회

-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산하에 관세위원회(Customs Committee)를 설치하여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 관련 문제를 협의
- 통관지연, 품목분류, 원산지 등 관련 분쟁발생시 일방 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관세위원회를 소집하여 협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3 무역구제

I 개요

- FTA에 따른 관세감축으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양자 세이프가드를 도입
 - 무역구제조치 발동 관련 요건을 강화하여 WTO에서보다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한 양자 세이프가드 또는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I 상세 내용

1. 양자 세이프가드 (Section A)

-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의 결과로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like or directly competitive goods)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serious injury or threat)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까지 관세인상 가능
 - 원칙적으로 협정발효 후 10년 동안 발동 가능
 - 발동기간은 2년이며, 1년간 연장 가능(연장기간을 포함하여 3년이 최대 한도)
- 동일 상품에 대한 재발동 전면 금지, 보상·보복 규정을 도입하여 FTA 무역자유화 취지에 역행하는 양자세이프가드 남용을 방지



2. 다자 세이프가드 (Section B)

-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권한 보유
 - 단,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세이프가드와 다자 세이프가드의 동시 발동은 금지

3. 반덤핑 및 상계관세 (Section C)

- 반덤핑마진 계산시 ‘제로잉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
 - ※ 제로잉 금지 : 반덤핑마진 계산시 양 또는 음의 값에 상관없이 모든 개별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 하도록 함으로써, 음의 마진을 임의로 누락하여 총 덤핑마진이 높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
-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는 덤핑 마진 또는 보조금 마진이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부과 가능(“Lesser-duty Rule”)
 - ※ WTO 반덤핑 및 보조금 협정상 ‘Lesser duty Rule’은 바람직한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적용의무는 미규정(WTO 반덤핑 협정 제9.1조, WTO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에 관한 협정 제 19.2조)
- 반덤핑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상대국에 반덤핑 조사신청서 접수 사실을 통보
 - ※ WTO 반덤핑 협정은 조사 개시 전 통보의무만 규정(WTO 반덤핑 협정 제5조)
- 덤핑 마진이 수출가액의 2% 미만일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미소기준 (de minimis) 확대 적용
 - WTO 반덤핑 협정 제5.8조에 따른 원심(original investigation)뿐만 아니라, 종료재심 · 신규 수출자 재심 · 상황변동 재심 등 재심(review)에도 적용됨을 명시
 - ※ WTO 반덤핑 협정상 미소기준은 원심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을 뿐, 재심에 대해서는 적용여부가 불투명

- 다수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관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한지를 ‘특별한 주의’를 갖고 검토할 의무를 부과(“non-cumulation”)

※ WTO 반덤핑 협정상 합산여부는 조사당국의 재량(WTO 반덤핑 협정 제3.3조)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항은 FTA 분쟁해결절차에서 제외



14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I 개 요

-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등이 양국간 상품교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 및 방안에 대해 규정
 -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의 제·개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 공동협력 강화, 양측간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TBT 조정자 지정 등을 포함

I 상세 내용

1. 투명성 (상품무역협정 제5.10조)

- 각 당사국은 기술규정 관련 법령 등을 제·개정할 경우 자국에 소재하고 관련 법령에 등록되어 있는 상대국의 이해관계자(economic operator)의 비차별적 참여를 허용
- 제·개정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안)를 WTO에 통보시 동시에 상대국에도 통보
-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제·개정시, 상대측이 요청하는 경우동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제·개정 목적(objective), 정당성(rationale) 등 정보를 제공
 - ※ 상품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는 기술규정의 채택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무역기술장벽 완화에 기여(통상마찰 사전예방 효과 기대)
- 제·개정된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키 위한 공개된 웹사이트 등 설립
 - ※ 우리나라는 TBT 통합포탈정보사이트(www.tbt.kr)에서 기술규정 제·개정 사항 및 TBT 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

- 제·개정하고자 하는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안)을 WTO에 통보한 후 가능한 경우 최소 60일의 서면의견 제출기간을 부여

2. 공동 협력 (상품무역협정 제5.3조)

- 양국간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의 불필요한 차이를 줄이고 수렴(converging) 또는 정합(aligning) 가능성을 검토
 - ※ WTO TBT 협정에는 타국 기술규정이 자국 규제목적 달성에 충분한 경우 타국 기술규정을 자국 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권장(2조 7항)
- 적합성 평가결과에 대한 상호 인정 협정 관련 상대국이 논의를 요청하는 경우 긍정적으로 고려

3. TBT 조정자(Coordinator) 지정 (상품무역협정 제5.8조)

- TBT 첩터의 이행, 관련 사안의 협의 및 해결 등을 위해 TBT 조정자를 지정
 - 양측은 매년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정례위원회(TBT committee)는 설치하지 않는 대신, TBT 조정자를 지정하고 필요시 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
 - ※ TBT 조정자 : 우리측 기술표준원 및 터키측 경제부 제품안전검사국



15 예외 및 최종 규정

I 예 외

1. 조세 예외 (기본협정 제8.1조)

- 조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협정과 여타 조세조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
 - 다만, 예외적으로 내국민대우 조항 및 수출세 관련 조항은 조세조치에 적용

2. 국제수지 예외 (기본협정 제8.2조)

- 양국은 국제수지 목적의 조치 가능
 - 단, 그 조치는 비차별적으로 시행

3. 안보 예외 (기본협정 제8.3조)

- 공개시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비공개 가능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 또는 국제 평화 및 안보 관련 의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 가능

■ 최종 규정

1. 협정 발효

- 양국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두 번째 달 첫째일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시점에 협정 발효

2. 협정 종료

- 한 당사국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6개월 경과후 협정 효력이 종료

3. 기타

- 협정 개정은 서면으로 합의 가능
 - 양국이 각자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시점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시점에 협정 개정 효력 발생
- 터키가 유럽연합에 가입할 경우, 양국은 가입 결과에 관한 협의 개시
- 한국어, 터키어 및 영어 협정문이 모두 동등한 정보
 - 단, 불일치시 영어본이 우선

한 · 터키 FTA 상세설명자료

인 쇄 · 2012년 7월

발 행 · 2012년 7월

발행처 · 외교통상부 FTA정책국 FTA협상총괄과
주 소 · (100-7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TEL · (02)2100-0861 FAX · (02)2100-8097

인 쇄 · 우신기획